

문서번호 알파자산운용-23기-2024-발송 145 호

발신일자 2024-09-12

수신처 수신처 참조

참조 공모 집합투자기구 담당자

제목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개정통보 및 교부 요청의 건

- 귀 행,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,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123조 제3항에 따라 개정 내용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정정사유

펀드유형	대상펀드	변경사유
일반펀드	알파채권스텝업공모주 증권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	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(S 클래스 정의 변경)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
일반펀드	알파 시나브로 공모주 증권투자신탁 1호[주식혼합]	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(S 클래스 정의 변경)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
자펀드	알파글로벌별신재생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	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(S 클래스 정의 변경)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표준편차 → 최대손실예상액) 반영 (표준편차 기준 30.49% → 97.5 VaR 기준 46.69%, 1등급 → 2등급 변경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
모펀드	알파글로벌별신재생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표준편차 → 최대손실예상액) 반영 (표준편차 기준 30.55% → 97.5 VaR 기준 46.72%, 1등급 → 2등급 변경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

2. 개정일자 : 2024년 9월 20일(효력발생일)

3. 수신처 : IBK투자증권, KB증권, NH농협은행(위탁판매), NH투자증권, SK증권, 교보증권, 대신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증권, 신영증권, 엘에스증권, 우리은행(판매)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화투자증권

[첨부] 1. 집합투자계약 각 1부.

2. (간이)투자설명서 및 변경대비표 각 1부. 끝.

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
대표이사 최준혁

